

# 2023 한여울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『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』에 의거 한여울초등학교 학부모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설치) 학부모회의 명칭은 ‘한여울초등학교 학부모회’라 하고, 한여울초등학교에 설치한다.

제3조(기능)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- ①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
- ②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·지원
- ③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
- ④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

제4조(회원) 회원은 본교 및 병설유치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(학부모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)로 한다.

제5조(임원 등의 구성)

-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, 부회장 1명,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.
- ② 임원은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, 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 (다만, 입후보자가 임원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.) **다만, 총회에 직접 참여하여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한다.**  
**(※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,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, 우편투표 등)**
- ③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한다.
- ④ **학부모회 임원선출을 위하여 대의원회 추천으로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, 임원 선출 절차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.**
- ⑤ **임원 선출은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.**

제6조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
- ②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③ **직을 사퇴하고자 하는 임원은 사퇴서를 대의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**
- ④ **임원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,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대의원회 결정으로 보궐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.**

제7조(임원의 직무)

-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연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8조(학부모회의 조직)

-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.
-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교 및 유치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, 기능별 학부모회를 둔다.
- ③ **기능별 학부모회는 녹색학부모회, 학부모폴리스 등을 둔다.**

### 제9조(총회)

- ①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.
-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.
  -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- 2.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
  - 3. 회원10%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- ④ 총회소집은 7일 전에 의제, 일시, 장소를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.  
**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.**
- ⑤ 총회는 회원의 1/10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**다만,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는 총회 안건에 대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사전투표하여 안건에 대한 의사를 회신한다.**
-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### 제10조(총회의 보고 및 의결사항 등)

-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- 1. **학부모회 활동 결과 보고**
  - 2. **학부모회 예산 및 결산 보고**
  - 3. **학부모회 감사 보고**
  - 4. 학부모회 규정 개정
  - 5. 학부모회 임원 선출
  - 6.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
  - 7.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
  - 8.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.
- ③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2조 및 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### 제11조(대의원회)

-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.
- ② **대의원회는 임원, 학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, 유치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, 학교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, 유치원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,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한다.**

-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.
-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**매년 3월, 연 1회 이상** 개최하고,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-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-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,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**학교 홈페이지 등에** 공고하여야 한다.
-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2조(대의원회의 의결사항)**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 학부모회 규정 재·개정안 발의
- ② 학년학부모회, 기능별 학부모회 활동보고
- ③ 학부모회 세부 활동 계획 **및 결과**에 관한 사항
- ④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
- ⑤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
- ⑥ 임시총회 소집요구
- ⑦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

**제13조(학년 학부모회)**

-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, 학년 학부모회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.
-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, 학년 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.
-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1/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

**제14조(학급 학부모회)**

- ① 학급 학부모회는 해당 학급의 학부모로 구성하고, 학급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급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.
- ② 학급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급 학생들의 학교생활, 학급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.
- ③ 학급 학부모회는 학급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급 학부모회 회원 1/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

**제15조(기능별 학부모회)**

-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,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.
-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제11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.

**제16조(해산)**

-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·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일자로 해산한다.
-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.
-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 귀속된다.

**제17조(청산)**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.

**제18조(재정지원 등)**

-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**행정적 지원을 하고**,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 지원비 등으로 한다.
-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**제19조(회계년도)** 학부모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. 다만,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) 이 규정은 학부모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
제2조(학부모 총회의 소집) 최초의 학부모회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.